

[사 건 명] 행심 2018 - 39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서면사과』 처분 취소 청구

□ 청구인 : ◇◇◇◇

□ 피청구인 : ◎◎학교장

[주 문] 피청구인이 2018. 04. 24. 청구인의 보호자에 대하여 한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서면사과』 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재결이유]

I. 사건개요

- 가. 2018. 03. 26. 이전부터 청구인(지적장애)과 ○○○(지적장애, 자폐성발달장애)학생은 서로 카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청구인이 비키니 몸매, 여자연예인 댄스 동영상 링크를 ○○○ 학생에게 보냈고, 곧바로 ○○○ 학생이 청구인에게 보이스톡을 했으나 청구인은 받지 않았음.
- 나. 2018. 03. 26. ○○○ 학생이 청구인에게 셀카사진과 메시지를 보냈고, 청구인이 자신의 가슴사진을 보냈음.
- 다. 2018. 03. 27. ○○○ 학생이 청구인에게 보이스톡을 걸었으나 청구인은 받지 않았고, 2018. 03. 28.에는 ○○○ 학생이 청구인에게 자신의 가슴사진을 보냈고, 보이스톡과 육설 메시지를 보냈으나 청구인은 이에 답을 하지 않음.

- 라. 2018. 03. 29. ○○○ 학생이 청구인에게 욕설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청구인은 답이 없었음.
- 마. 2018. 04. 13. ○○○ 학생이 청구인에게 동물원 사진을 보냈고 청구인은 답이 없었으며, 2018. 04. 15.에는 청구인이 ○○○ 학생에게 의미를 알 수 없는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 학생은 답이 없었음.
- 바. 2018. 04. 16. 오후 3시 경 청구인이 결석상태 중 ○○○에게 의미를 알 수 없는 메시지를 보냈고, ○○○ 학생은 셀카사진을 보냈으며, 그 후 청구인이 가슴을 보여 달라는 메시지(‘이거 말고 사진 사전 카드 보여 줘, 가슴 보여줘’)와 가슴이 보이는 연예인 사진을 전송하였음.
- 사. 2018. 04. 24. 청구인의 보호자에게 제17조 제1항 제1호 「서면사과」 처분 조치하고, ○○○ 학생에게는 제16조 제1항 제1호 「심리상담 및 조언」 조치함.

II.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한다.

- 가. 이번 사건은 ○○○ 학생이 먼저 카톡으로 청구인에게 연락을 해와 발단이 된 것이다.
- 나. 청구인은 지적장애 2급으로, 두 학생이 주고받은 심하지 않은 대화내용을 가지고, 피해학생측은 치료비 명목으로 과도한 비용을 발생하게 하였다.
- 다. 이 사안에서 객관적이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한 처사로 인해 청구인과 청구인 가족들은 괴로움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청구인이 ○○○ 학생에게 심각한 정신적 상해를 입혔는지에 대해 공정하게 조사하여

더 이상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

라. 피청구인의 이 사건 서면사과처분은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보호자에 대한 것으로 이는 부당하다.

Ⅲ.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도 ○○○ 학생으로부터 욕설, 수차례의 보이스톡, ○○○ 학생의 가슴 사진 등을 받아 일부분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을 확인하였으나, 2018. 04. 16. 청구인이 ○○○ 학생에게 ‘이거 말고 가슴 보여줘’ 라는 요구와 음란성 동영상 링크를 보낸 점이 명백한 사이버 성폭력으로 판단하여 가해학생으로 지정하게 되었고, 학폭위에서는 청구인의 정신적 피해도 함께 고려하여 서면사과 처분 결정을 내렸다.

나. 학폭조치결과로 인해 청구인이 상당한 금액의 치료비를 지불해야하는 점을 피청구인은 충분이 인지하고 있고, 서면사과 처분을 취소하여 재심의 받고 싶은 심정도 이해하고 있다.

다. 피해학생 조치인 「심리상담 및 조언」에 따른 치료비는 학교폭력 사안 건으로 인한 비용이어야만 하는데, 학폭 사안 건 외 피해학생의 장애 특성으로 수반되는 정서적 불안정 등의 심리문제까지 본 사건에 묶어 심리치료 비용에 포함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라. 청구인측은 학교안전공제회에 피해학생의 청구비 내역 등을 확인하여 학폭 사안으로 인한 심리상담에만 치료비용을 지불하도록 청구인의 적극적인 조치가 요구된다.

마.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보호자에 대하여 이 사건 서면사과처분을 한 이유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것이며, 청구인의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IV.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관계법령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7조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8조

2.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와 답변서 및 증거자료, 청구인 및 피청구인의 대리인 각 구술심리결과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18. 04. 16. 오후 3시 경 청구인이 결석상태 중 피해학생에게 의미를 알 수 없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학생은 학생은 셀카사진을 보냈으며, 그 후 청구인이 피해학생에게 가슴을 보여 달라는 메시지(‘이거 말고 사진 사전 카드 보여 줘, 가슴 보여줘’)와 가슴이 보이는 연예인 사진을 전송하였다.

청구인과 피해학생은 그 이전에도 상호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와 신체부위 사진 등을 보낸 사실이 있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약취,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바,

2018. 04. 16. 오후 3시 경 청구인이 피해학생에게 가슴을 보여 달라는 메시지(‘이거 말고 사진 사전 카드 보여 줘, 가슴 보여줘’)와 가슴이 보이는 연예인 사진을 전송한 행위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정하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위법/부당 여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학교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고 하는바,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그 입법목적으로 규율하고 있고, 가해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 또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조치가 가능하다고 하고, 동법 시행령 제19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다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6항에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14일 이내에 해당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법률 제1항 제1호의 서면사과처분은 가해학생에 대하여 행해져야 하는 조치임이 명백하다할 것이다.

그러나 본 사건에 있어 ○○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위 법률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서면사과처분을 피청구인에게 요청하였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위 법률규정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보호자에 대한 서면사과처분을 피청구인에게 요청하였고, 피청구인 역시 위 법률규정을 위반하여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보호자에 대하여 서면사과처분을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보호자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서면사과처분은 위 법률을 위반하여 중대·명백한 하자를 가져 무효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2018. 4. 24. 청구인의 보호자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서면사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라. 결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의 청구인의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보호자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서면사과처분은 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위반한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사유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이 2018. 4. 24. 청구인의 보호자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서면사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보호자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법률위반의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위와 같이 취소되어야 하지만,

청구인의 이 사건 행위는 여전히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고, 청구인에 대한 피해학생의 행위 역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들의 상호행위에 대하여 선도 및 교육목적의 적절한 조치가 행해져야 하는바, 피청구인은 ○○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다시 열어 문제가 된 청구인 및 피해학생 등 관련학생들의 언행들에 대한 학교폭력 여부 및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새로이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에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과 관련하여 ○○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다시 개최할 것을 권고한다.

V.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2018. 4. 24. 피청구인의 보호자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서면사과처분은 취소한다.